

제67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

1. 회의일시 : 2015. 12. 10.(목) 09:30

2. 장 소 :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

3. 참석위원 : 최성준 위 원 장
김재홍 부위원장
허원제 상임위원
이기주 상임위원
고삼석 상임위원 (5인)

4. 불참위원 : 없음

5. 회의내용

① 성원보고

② 국민의례

③ 개회선언

④ 지난 회의록·속기록 확인

○ 제58차, 제60차, 제61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함

⑤ 서면회의 결과 확인

○ 제65차 서면회의 결과 <의결안건> 1건, 제66차 서면회의 결과 <의결안건> 1건이
원안대로 의결·접수되었음을 보고함

⑥ 회의공개 여부 결정

○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공개로 회의를
진행함

7 의결사항

가. 2015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에 관한 건- 도로교통공단, 원주·창원 방송국 -(2015-67-284)

- 2015년 12월 31일에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도로교통공단의 2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심사결과를 전영만 방송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 받고 심의한 결과,
 - 방송법 제17조(재허가등)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, 2개 방송국이 기준점수 650점 이상을 받고 전파법령에 따른 기술심사 요건도 충족하여 재허가하되,
 - 허가 유효기간은 사업자 희망, 재허가 심사의 효율적 운용 등을 고려하여 3년으로 하고, 심사위원회 심사의견과 미래창조과학부의 심사결과 등을 반영하여 허가조건 및 권고사항을 부과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

나. 방송통신 결합상품 허위·과장 광고 등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(2015-67-285~293)

- (주)케이티 및 (주)씨제이헬로비전 등 9개 방송통신사업자가 '15.9.1. ~ '15.10.20. 기간 중 방송통신 결합상품 관련 허위·과장·기만 광고를 통해 이용자 이익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(안)을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심의한 결과,
 -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(금지행위)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(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)제1항 [별표 4] 제5호 바목을 위반한 (주)케이티 및 (주)씨제이헬로비전 등 9개 방송통신사업자에 대해 같은 법 제52조(금지행위에 대한 조치)제1항에 따라 금지행위의 즉시 중지, 시정조치 이행 계획서 제출 등 시정조치를 명하고,
 -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(금지행위)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(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)제1항 [별표 4] 제5호 바목을 위반한 (주)케이티, 에스케이텔레콤(주), (주)LG유플러스에 대해 각 5억6천만원, 에스케이브로드밴드(주)에 대해서는 2억8천만원, (주)씨제이헬로비전, (주)티브로드에 대해 각 1천8백만원, (주)씨앤엠에 대해서는 1천2백만원, (주)현대HCN 금호방송, (주)CMB 대전방송에 대해 각 6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함

8 보고사항

가. 2015년도 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결과 등에 관한 사항

- 2015년도 통신사업자 이용자보호업무 평가계획에 따라 실시한 평가결과와 활용 방안을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의 보고를 받고,
 - '매우우수등급' 사업자는 초고속인터넷 분야 및 인터넷전화 분야 각 1개사(SKB)이며, '우수등급' 사업자는 이동전화 분야 1개사(SKT), 초고속인터넷 분야 2개사(KT, SKT), 인터넷전화 분야 2개사(LGU+, KT)로 정한 평가 결과와 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 부여 및 사업자별 우수사례 공유 등 활용방안을 원안대로 접수함

6. 폐 회 (10:02)